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영진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6. 6.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실제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9.12. 갑상선결절로 인하여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9.16. A보험회사에 수술비 또는 입원실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32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02조의2
2. 「보험업법」 제102조의3